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노인학대보도에 권고기준 수립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399호, 2023. 5. 2. 공포, 2023. 11. 3.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449호, 2023. 6. 13. 공포, 2023. 12. 14.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노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을 협의하기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규정(안 제20조의15 신설)

나.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별표 2]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15(노인학대 보도 권고 기준 수립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 법 제39조의21제1항에 따른 언론의 노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을 위하여 협의하여야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4.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른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

별표 2 제2호 나목부터 바목을 다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법 제39조의7제6항에 따른 노인학	법 제61조의2	500	1,000	1,000
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	제1항제1호			
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별표 2 제2호 아목부터 자목을 자목부터 차목으로 하고 사목을 아목으로 하며 아목(중전의 사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1조의2제1항”을 “법 제61조의2제1항제2호”로 한다.

부 칙

제20조의15 개정규정은 2023년 11월 3일부터 시행하고, 제27조에 따른 별표 2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u>제20조의15(노인학대 보도 권고 기준 수립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 법 제39조의21제1항에 따른 언론의 노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을 위하여 협의하여야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u> <u>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u> <u>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u> <u>4.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른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u> ■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 라. (생 략)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생 략)				
<신 설>				
나. ~ 바. (생 략)				
사. 법 제39 조의17제9 항에 따른 해 임요구를 정 당한 사유 없 이 거부하거 나 1개월 이 내에 이행하 지 않은 경우	법 제61 조의2 제1항	500	1,000	1,000
아. ~ 자.				

1. 일반기준

가. ~ 라.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현행과 같음)				
나. 법 제39 조의7제6 항에 따 른 노인 학대 현 장에 출 동한 자 에 대하 여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 나 업무 를 방해 한 경우	법 제61조 의2제1 항제1호	500	1,000	1,000
다. ~ 사. (현행 나.~바. 와 같음)				
아. 법 제39 조의17제9	법 제6 1조의2	500	1,000	1,000

(생 략)					항에 따른 해	<u>제1항</u>			
					임요구를 정	<u>제2호</u>			
					당한 사유 없				
					이 거부하거				
					나 1개월 이				
					내에 이행하				
					지 않은 경우				
					자. ~ 차.				
					(현행 아.~				
					자.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452